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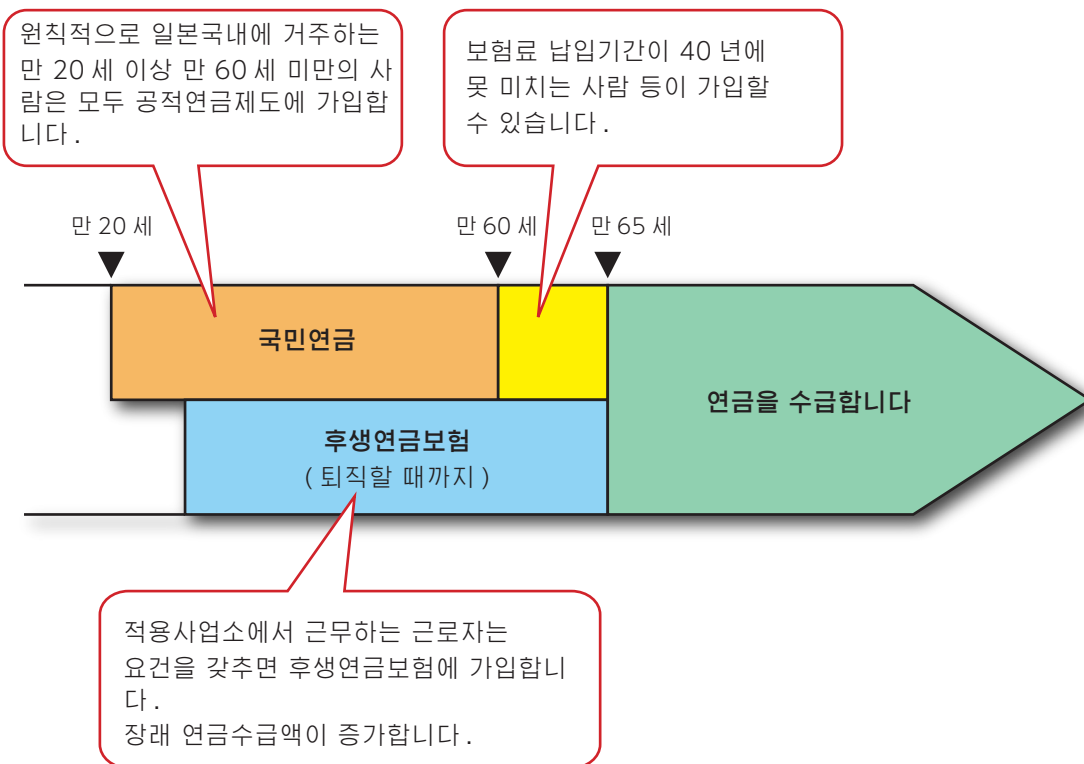
연금

일본의 연금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가 서로 협력하여 평생의 보장을 실현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세대가 납입한 보험료를 고령자 등의 연금 급여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 · 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의 이미지도]



1-1 국민연금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본국내에 거주하는 만 2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의 사람은 모두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입자) 및 가입수속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입자)에는 제 1 호~제 3 호의 3 가지 종별이 있습니다.

① 제 1 호 피보험자

- 자영업자나 학생 등 제 2 호 피보험자, 제 3 호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시구청촌에서 담당합니다.

② 제 2 호 피보험자

-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회사 등(사업주)이 담당합니다.

③ 제 3 호 피보험자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에 의해 부양되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됩니다.
- 가입수속은 배우자(국민연금 제 2 호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회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제 1 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는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만 65 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도 제 3 호 피보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①에서 ③의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서 일본에 사는 60 세 이상 70 세 미만의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임의 가입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수속은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서 실시합니다.

※ 65 세 이상 70 세 미만인 사람은 1965 년 4 월 1 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10 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등 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보험료

- 제 1 호 피보험자 및 임의 가입 피보험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률적입니다. 또 신청에 의해 일반 보험료에 추가하여 보험료(부가보험료: 월 400 엔)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 2 호 피보험자, 제 3 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료는 납부서(금융기관 창구, 편의점 등에서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일시불 선불로 납입할 경우 할인 적용이 됩니다.
- 제 1 호 피보험자는 수입의 감소나 실업 등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기 힘들 경우 보험료 면제 또는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촌 또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미납이 계속되면,

- 미납 1 년당 ‘노령기초연금’ 이 연간 약 2 만엔 적어집니다.
-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망하게 되었을 때 유족 분이 ‘유족기초연금’ 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급부

노령기초연금

- 수급자격기간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과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 등) 이 10 년 이상인 경우 만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노령기초연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만 20 세부터 만 60 세까지 40 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은 노령기초연금의 전액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 보험료를 납부한 분은 ‘200 엔×부가 보험료 납부 월수’ 의 부가 연금액 (연액) 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미납기간은 수급자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이 있는 노령기초연금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의 종류와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비율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애기초연금

-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에 초진일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 이 있다
- ②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으로 일정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 ③ 진일 전날시점에서 보험료의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다

- 장애기초연금의 장애등급에는 1 급, 2 급이 있습니다.
- 장애기초연금의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장애등급 1 급 → 노령기초연금 만기액의 1.25 배의 금액
- ② 장애등급 2 급 → 노령기초연금 만기액과 동등한 금액

- 1 급, 2 급 모두 ‘자녀’ 가 있으면 금액이 가산됩니다.

유족기초연금

- 다음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는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① 또는 ②에 해당

- ① 국민연금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 그 사람이 국민 연금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 ②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이 25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이 사망했다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유족기초연금 금액은 노령기초연금의 만기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됩니다.

원 포인트:

‘자녀’란

‘자녀’란 혼인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만 18세가 된 연도의 3월 31일까지의 자녀
- 만 20세 미만으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



사망일시금

- 제 1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를 끝낸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사람이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중 어느 하나도 수급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유족은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가 면제된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미망인연금

- 미망인연금은 국민연금 제 1호 피보험자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기간 등이 10년 이상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혼인관계가 10년 이상 계속된 부인은 만 60세부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미망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미망인연금 수급액은 남편의 제 1호 피보험자 기간만을 근거로 산정한 노령기초연금액의 4분의 3입니다.

1-2

후생연금보험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적용사업소의 요건과 가입을 위한 요건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후생연금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1) 피보험자(가입자)

-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만 70 세 미만의 갖추면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가입자)가 됩니다.
- 70 세 이상의 사람도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을 가지지 않는 등 일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 피보험자(고령임의가입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사업소의 요건

다음과 같은 사업소는 적용사업소가 됩니다.

- ① 주식회사 등의 법인
- ②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개인사업소(5인 이상)
- ③ 노사 합의로 임의로 적용되는 사업소

※피보험자가 되는 요건

적용사업소에 사용되는 (가)~(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됩니다.

- (가) 정사원이나 법인의 대표자, 임원
- (나) 1 주일의 소정 노동시간 및 1 개월의 소정 노동일수가 같은 사업소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사원의 4 분의 3 이상인 사람(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 (다) 정사원의 4 분의 3 미만이어도 ①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이 20 시간 이상, ②월액 임금이 8.8 만엔 이상, ③학생 이외, ④종업원 101 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주 1) 국가·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 적용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①~③의 요건만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주 2) ④의 기업 규모에 대해서는 2024년 10월 1일 이후는 51명 이상이 됩니다.

(주 3) 고용 기간의 예정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사람으로, 그 기간을 넘어 근무하는 것이 예상되지 않는 사람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당초 고용기간이 2개월 이내라도 갱신의 가능성이 있으면 계약 당초부터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보험료

- 본인부담분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text{매월의 급여(표준보수월액)} \times \text{상여금(표준상여액)} \times \text{보험료율} \div 2$$

※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입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3) 보험 급부

노령후생연금

- 노령기초연금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1 개월 이상 근로자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노령 근로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후생연금액은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입자)였던 시기의 매월의 급여(표준보수월액) 등과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 일정한 생년구분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춘 사람은 만 65 세가 되기 전에 노령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후생연금

-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후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에 초진일(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다
 - ② 질병이나 부상이 원인으로 일정 이상의 장애가 남았다
 - ③ 초진일 전날시점에서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있다
- 장애후생연금의 장애등급에는 1 급, 2 급, 3 급이 있습니다.
- 장애후생연금액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① 장애등급 1 급 → 노령후생연금의 1.25 배의 금액
 - ② 장애등급 2, 3 급 → 노령후생연금과 동일한 금액

※ 장애등급 3 급의 장애후생연금에는 최저보장액이 있습니다.

최저보장액 = 2 급 장애기초연금액 × 3 / 4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수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시금으로 장애수당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족후생연금

- 다음의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면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② 보험료 납부요건을 갖추고 피보험자(가입자)가 기간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초진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③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사람으로,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기간이 25 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 ④ 1 급, 2 급의 장애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유족후생연금의 수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노령후생연금의 금액의 4 분의 3 입니다.

원 포인트:

유족이란

유족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 (남편은 만 55 세 이상 , 만 60 세부터 지금)
- ② 자녀 (국민연금에서의 자녀와 같은 의미)
- ③ 부모 (만 55 세 이상 , 만 60 세부터 지금)
- ④ 손자 (자녀와 동일한 요건 있음)
- ⑤ 조부모 (만 55 세 이상 , 만 60 세부터 지금)

※ 남편에게 유족기초연금 수급권리가 있을 때에는 유족후생연금을 만 55 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손자, 조부모는 본인보다 순서가 먼저인 사람들이 수급할 때에는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

탈퇴 일시금

청구 요건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할 경우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
- ②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가입자) 였던 기간 또는 국민연금 제 1 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완료기간 등이 6 개월 이상이 된다
- ③ 노령연금 수급 자격기간 (통산 10 년간) 을 채우지 않았다
- ④ 일본에서의 주소가 소멸됐다
- ⑤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이 소멸됐다
- ⑥ 장애연금 등의 수급권을 가진 적이 없다
- ⑦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

청구 시 유의 사항

다음은 탈퇴 일시금 청구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 ① 탈퇴 일시금을 수급하게 되면 청구전의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기록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따라서 장래, 일본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탈퇴 일시금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주의깊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 ※ 탈퇴 일시금 청구서는 일본연금기구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주의사항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② 일본 연금기구가 청구서를 수리한 날에 여러분의 주소가 아직 일본에 있을 때에는 탈퇴 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주지 시구청촌에 진출신고서를 제출하신 후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일본을 출국하기 전에 일본국내에서 청구서를 우송 등으로 제출할 때에는 청구서가 출국일 이후에 일본연금기구에 도착하도록 송부해 주십시오.
- ④ 탈퇴 일시금 지급액은 일본의 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연수를 상한으로 산정됩니다. 2021년 4월부터 이 상한 연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상한 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 가입기간이 2021년 3월 이전에만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3년(36개월)을 상한으로 해서 계산

◎ 연금 가입기간이 2021년 4월 이후에도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의 5년(60개월)을 상한으로 해서 계산

아울러, 일본 체재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일본의 연금제도 가입기간이 통산 상한 연수 이상이 될 예정의 사람이, 가입기간에 따른 탈퇴 일시금의 수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출국할 때마다 탈퇴 일시금을 청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서, 송부처, 탈퇴 일시금의 세부 사항에 관해서는 일본연금기구 Japan Pension Service 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enkin.go.jp/service/jukyu/todoke/kyotsu/20150406.html>



원 포인트:

사회보장협정

일본은 현재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에 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은, 각 나라에서의 연금 가입기간이 짧더라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본이나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이 어느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nenkin/nenkin/shakaihoshou.html>



2 간병 (개호) 보험

일본에는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 등을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간병 (개호)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제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비용의 일부를 내고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가입대상자

만 40 세 이상으로 3 개월 이상 일본에서 생활할 경우에는 간병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2-2 보험료

간병보험 가입대상자는 전년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다음의 연령구분이나 살고 있는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만 65 세 이상 (제 1 호 피보험자)
연금에서의 공제징수가 원칙입니다 (일부는 납부서 등에 의해 징수).
- ② 만 40 세 이상 만 65 세 미만 (제 2 호 피보험자)
의료보험의 보험료에 추가되어 징수됩니다.

간병보험제도 (제 2 호 피보험자) 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newpage_10548.html



2-3 간병서비스의 이용

간병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시구청촌에 '요간병 (요지원)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허가를 받는다.
 - ※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간병 (요지원) 인정' 을 받아야 합니다.
 - ※ 신청을 하게 되면 심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며, 원칙적으로 30 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② 케어매니저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간병서비스 계획 (케어플랜) 작성을 의뢰한다.
 - ※ 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시설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 ③ 케어 플랜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
 - ※ 그 밖에 '요간병 (요지원) 인정' 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간병예방, 생활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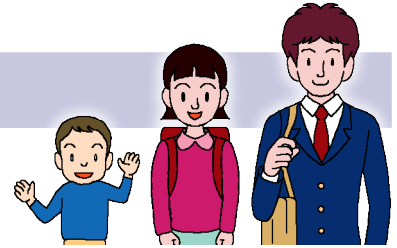
3

아동복지

3-1

아동수당

제 4 장 3-4 아동수당을 참조해 주십시오.



3-2

아동부양수당

-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되는 아동 (※) 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보살피고 있을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 ① 부모가 혼인을 해소한 아동
- ②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아동
- ③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정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 ④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등

(※) 아동이란, 만 18 세가 된 연도의 3 월 31 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나 만 20 세 미만으로서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칭합니다.

월지금액

※ 2023 년도의 금액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 아동 1 인의 경우
전액지급 : 44,140 엔 일부지급 : 44,130 엔부터 10,410 엔까지
- 아동 2 인 이상의 가산액

[2 명째]

전액지급 : 10,420 엔 일부지급 : 10,410 엔부터 5,210 엔까지

[3 명째 이후 1 명당]

전액지급 : 6,250 엔 일부지급 : 6,240 엔부터 3,310 엔까지

※ 지급액은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적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수당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특별아동부양수당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녀 (만 20 세 미만) 를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부모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등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액

※ 2023 년도 수급액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 특히 중증 (장애기초연금 1 급 해당)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 인당 5 만 3,700 엔 / 월
- 중증 (장애기초연금 2 급 해당)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1 인당 3 만 5,760 엔 / 월

3-4

장애아복지수당

정신 또는 신체의 중증 장애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아동 (만 20 세 미만) 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등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액

※ 2023 년도의 금액 (물가에 따라 매년 변동합니다)

1 만 5,220 엔 / 월

4

장애복지

4-1

수첩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첩을 발급받으면 세금감면이나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첩의 종류

- 신체장애인 수첩 : 신체에 영구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요육(療育) 수첩 :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 정신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hougaisahukushi/techou.html

※ 상담은 거주하는 자치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장애인·장애아에 대한 행정 서비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에는 간병이나 발달재활훈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에 대한 행정지원으로는 장애아의 발달지원이나 간병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장애아를 위한 행정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구 정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생활보호

5-1, 5-2 과 같은 내용을 실시하여도 세대별 수입이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않을 경우,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을 제한 차액을 보호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생활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결정합니다.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생활보호에 준하는 보호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영주자,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 등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1

생활보호 수급 요건 등

(1) 자산의 활용

예금, 적금,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가옥 등이 있을 때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생활비에 충당하십시오.

(2) 능력의 활용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능력에 맞게 일을 하십시오.

(3) 기타 급여 등의 활용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제도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면 우선 그것을 활용하십시오.

(4)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

친족 등에게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5-2 보호의 종류와 내용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맞추어 지급이 결정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비용	보조의 종류	지급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식비, 의류, 광열비 등)	생활보조	• 식비 등의 개인적인 비용 • 광열수도비 등의 세대 공통비용을 합하여 기준액을 산출
아파트 등의 집세	주택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용품 등의 비용	교육보조	정해진 기준금액을 지급
의료서비스 비용	의료보조	비용은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 (본인부담 없음)
간병서비스의 비용	간병보조	비용은 직접 간병 사업자에 지불 (본인부담 없음)
출산비용	출산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취업에 필요한 기능 습득 등에 드는 비용	생업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상제 비용	상제보조	정해진 범위내에서 실비 지급

6

생활곤란자 자립지원제도

생활에 곤란을 겪는 사람의 자립을 지원하는 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취업이나 가게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